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1093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장창호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6. 6. 3. 접수 제260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E는 부부이고, 원고, 피고 C, 소외 F, G는 위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기재된 사람들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D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2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1993. 7. 9. 사망하였다. D의 상속인이던 E는 위 각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역시 D의 상속인들인 원고, 피고 C 및 F, G는 위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E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하였던 각 3/11 지분을 E의 사망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 2항 부동산 중 망인 지분'이라 한다). 다. E는 2012. 7.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항 부동산 중 망인 지분을, 피고 C에게 군포시에 위치한 H아파트 I호 중 3/11지분과 이 사건 제2항 부동산 중 망인 지분을 각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작성 증서 2012년 제263호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E는 2016. 3. 3. 사망하였다(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마. 피고 B는 이 사건 제1항 부동산 중 망인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6. 6. 3. 접수 제26010호로 2016. 3. 3.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C는 이 사건 제2항 부동산 중 망인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6. 6. 3. 접수 제26009호로 2016. 3. 3.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경산시는 2016년경 이 사건 제2항 부동산 중 원고, 피고 C, F, G의 각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원고는 을 제1호증에 관하여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요지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유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피고 B, C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C는 경산시에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이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4에 해당하는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1) 망인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령으로 의사능력이 없었고, 피고들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2) 이 사건 제1, 2항 부동산은 원고 및 피고 C의 선대의 묘소가 안치된 선산으로, 장남인 원고가 묘소 관리 및 시제를 담당하였다. 평소 피고들에게 재산을 모두 넘겨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선산에 해당하는 위 각 부동산을 사위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2. 6. 9. 담당 의사인 K으로부터 상세 불명의 다발관절염, 만성 위염으로 진단받고 치매 환자에 대한 약물에 해당하는 아리셉트정을 처방받은 사실, 망인이 L의원으로부터 “치매약은 2015년 6월 타 병원 입원 중 복용하시다가 퇴원 후 2015. 6. 25.부터 본원에서 처방하여 복용하셨습니다.”라는 소견을 받은 사실, M병원의 2016. 3. 1.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에 관하여 ‘치매로 요양원 지내는 자’라거나 ‘알츠하이머 치매 과거력이 있는 환자’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망인에게 아리셉트정을 처방하였던 담당 의사 K은 2021. 4. 19. ‘망인이 2012. 6. 9. 본인이 운영하던 L의원에서 아리셉트 30일분 30정을 처방받은 적은 있다. 하지만 위 약품은 초기 치매 환자의 치매 진행을 억제함은 물론 치매 전 단계에서의 예방효과가 기대되는 약품으로, 치매로 판단되지 않은 고령의 환자에게도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있다. 망인의 경우에도 치매 진단이 적합하지 않으나 95세의 고령을 감안하여 처방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한 점, ② 실제 망인에 대한 2012. 6. 9.자 진료기록에 상세 불명의 다발관절염, 만성 위염만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치매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은 이후에도 2012. 6. 23., 2012. 7. 19., 2012. 8. 17. K으로부터 진단을 받았지만, 치매 관련 약물을 처방받지 않은 점, ④ 갑 제4호증(소견서)에도 ‘치매약은 2015년 6월 타 병원 입원 중 복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에 이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2015년 6월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점과 3년간 차이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인 2012. 7. 30.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요지

설령 피고들에 대한 유증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또한 피고 C는 망인의 금융재산 및 패물 등 모든 재산을 홀로 차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제1항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현금 상속액 중 1/4에 해당하는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상속인의 확정

피고들은, 원고가 D와 망인의 친자가 아니고, 원고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 낳은 자식이므로 망인과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닌 이유 등으로 상속인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등으로 인하여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제2항 부동산 중 망인 지분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경산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6. 22. 무렵에는 망인의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 사건 제2항 부동산 중 망인 지분이 피고 C에게 유증되었다는 사실 및 이는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지난 2020. 4. 28. 이 부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2항 부동산 중 2/11 지분을 소유 중이었고, 경산시는 2016. 6. 22.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있었던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경산시의 원고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 취득이 있기 9일 전인 2016. 6. 13., 경산시는 피고 C와

있었던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항 부동산 중 망인 지분을 포함한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제2항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경산시와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망인과 피고 C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 이전 및 피고 C가 경산시로부터 지급받은 협의 취득 대금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제1항 부동산 중 망인 지분

원고가 2016. 6. 22.경에는 망인과 피고 C 사이의 유증에 관하여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을 가진 공유자에 해당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대하여 묘소 관리, 시제 담당 등을 해왔다.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늦어도 2016. 6. 22.경에는 망인의 상속이 개시되었고, 망인이 사망 무렵 재산을 정리하였고, 이 사건 제2항 부동산 중 망인 지분을 피고 C에게, 역시 원고가 공유자인 이 사건 제1항 부동산 중 망인 지분을 피고 B에게 각 유증하였다는 사실 및 이는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지난 2020. 4. 28. 이 부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

따라서 이미 시효로 소멸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호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산시 N 임야 60441㎡
2. 경산시 O 답 565㎡

